



# 브렉시트 이후의 선택

미래 통상 및 경제 관계 재정립을 위한 유럽연합과 영국의 옵션

송준걸 상무 재무자문본부 구조조정그룹

## 들어가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재정분담금이 늘어나고,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영국내 EU회의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26만여 표 차이로 EU탈퇴가 가결되었다. 2018년 11월 25일, 영국의 EU탈퇴 방식과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공식서명되었으나,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의 1차 투표에서 230표차로 부결된 데 이어, 3월 12일의 2차 투표에서도 149표 차로 부결되었다. 한편, 3월 14일 영국 하원은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브렉시트를 연기하자는 영국 정부안을 가결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사안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간의 관계 재정립이다. 왜냐하면, 영국과 EU 모두 관계 재정립 없이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계 재정립은 미래 통상 및 경제 관계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여러 선택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EU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 관계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 미래 통상 및 경제 관계를 위한 대안

브렉시트 이후에 EU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럽경제지역(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관세동맹(A Custom Union), 포괄적 FTA(A Deep and Comprehensive FTA, DCFTA), 세계무역기구(WTO) 옵션이 제시되고 있다.



### 1. 유럽경제지역(EEA)

#### (1) 정의

EEA는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하 EFTA)이 합쳐서 구성된 거대 유럽단일 통합 시장이다. 1994년 1월 1일에 EFTA와 EU 사이에 발효한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EU가 단일 시장을 완성할 때 EU의 완전한 회원 자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3국(EFTA 소속 국가들)이 유럽 시장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협정으로, 전반적인 절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basic features)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사결정 참여 없음(다만, 일련의 의사결정 참여 형태는 구비)
- EU 통합기금에 대한 부담
- EU 법률의 직접적 효과와 우선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없음
- 직접적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대신 EFTA 법원이 분쟁에 대처
- 기타 일반 안전조항

#### (2) 영국이 EEA에 참여하기 위한 선행 요건

영국이 EEA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FTA에 가입해야 하고, EFTA 법원과 보안감시기관의 통제를 수용하도록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국이라는 새로운 당사자의 참여로 EEA 협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EEA는 혼합 협정<sup>1</sup>(mixed agreement)이기 때문에 EFTA와 EEA, EU 회원국 및 EU의 동의가 필요하다.

#### (3) EEA 옵션의 장단점

영국이 EEA에 참여하면 영국과 EFTA 기존 참가국들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영국의 경제 규모 및 인구가 EFTA의 다른 회원국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어서 영국이 EFTA를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지배하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EEA 참여로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대의명분인 ‘통제권의 환수’가 지켜지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EEA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이민 통제 반대, ECJ의 관할권 인정 및 영국의 재정 기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EEA의 장점과 단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장점**
  - ① 영국이 원하는 것이 ‘더 상징적인 형태의 주권 (more symbolic form of sovereignty)’이라면 EEA가 EU보다 더 나옴
  - ② EEA 법은 영국에 직접적인 효과 및 우선성이 없어 영국은 자국의 통상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단점**
  - ① EEA 옵션 적용 시 EU와 영국 간의 국경 통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② 영국의 독자적 통상정책으로 인한 통상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4) 대안과 예상 이슈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EEA와는 다른 EU와 영국 간의 ‘별도 EEA+관세동맹’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EU의 입장에서 기존의 EFTA와



다르게 영국과 별도의 EEA 모델을 적용할 명분이 없으며, 영국의 입장에서 ‘EEA+관세동맹’은 자체 통상정책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2. 관세동맹(A Customs Union)

#### (1) 정의

관세동맹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한 공동의 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구성된 일종의 무역 블록(trade bloc)이다. 참여국은 공동 통상정책을 수립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하며, 공동 경쟁 정책의 수행

으로 경쟁 부족(competition deficiency)을 피할 수 있다. 관세동맹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국 간의 정치적·문화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있다.

#### (2) 현황

EU가 제3국과 체결한 중요한 관세동맹은 없으며, 체결된 협정 중 주요한 협정은 터키와의 체결 건이다. 관세 및 관세 협정에 국한된 경우, 회원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sup>2</sup>(qualified majority voting)을 통해서 관세동맹을 체결할 수 있어 다른 옵션과 비교 시 의사결정이 용이해지고,

1 혼합 협정(예를 들어 규제 또는 투자 문제를 다루는 무역 협정)은 EU와 제3국 간에 ‘양자 간의 권한(powers)과 역량(competencies)’에 영향을 미치거나, ‘EU 또는 EU 회원국에 국한된 권한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다. 이럴 경우 EU와 EU의 모든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EU에서 입법권, 예산권, 협정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EU 이사회의의결 방식이다. 한 국가가 한 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987년 7월 1일 발효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 Agreement)에 따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만장일치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관세동맹과 관련한 문제들**

EU와 영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경우 영국은 EU의 대외 통상정책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영국이 EU의 기존 대외 통상 정책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EU가 기존의 모든 양자 간 통상 협상을 효과적으로 삼각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EU 통상정책의 제도적·정치적 복잡성이 커질 것이다.

한편, 관세동맹은 상품 거래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EU와 영국 간의 서비스 거래에 대한 협약은 관세동맹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세동맹은 ‘통관(custom control)’이 필요하지 않으나, EU는 관세가 없는 수입과 수출을 통제하는 법적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국경 통제와 관련한 EU와 영국 간의 명확한 협의가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3. 포괄적 FTA(DCFTA)**

**(1) 정의**

DCFTA는 EU와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사이에 각각 수립된 3곳의 자유무역지역이다. DCFTA는 각 국가의 EU 연합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일부로서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선별된 분야의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분야의 EU 투자자들에게 EU와 같은 규제 환경을 부여한다.

통상의 자유무역지역과 달리 DCFTA는 관련 국가에 EU 단일 시장의 ‘4가지 자유’인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데, 사람들의 이동에는 단기 체류 여행을 위한 비자 면제 체제를 적용하고, 노동자들의 이동은 EU 회원국들의 소관으로 한다. DCFTA는 ‘비EEA 회원국을 EU 단일 시장에 통합하는 예’로서 영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2) DCFTA 시 고려사항**

**• 제한사항의 존재**

DCFTA는 EU의 독점적 권한이지만, 2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첫째, EU는 투자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규정과 관련해 간접투자에 대한 독점적인 협정 체결 능력이 없으며, EU 국가 내 법원을 통하지 않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기존의 DCFTA는 조화, 규제 조정 또는 정합화(harmonization and regulatory alignment or convergence)와 관련해 규제 조정이나 조정 시스템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최소 표준은 EU 회원국들의 기존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상기 2가지 제한사항을 해결하는 협정은 혼합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EU 모든 회원국들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많은 공수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통합하에 DCFTA 도입 가능 여부**

시장 통합(market integration)을 유지한 채 DCFTA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사항이다. 영국은 이것이 가능하며, EU와 영국 간 규제 체계의 차이를 점진적인 차이(gradual divergence)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EU는 국내 규제의 통합만으로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상호 인정 시스템(system of mutual recognition)이 필요하고, 제품 및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므로, 규제 체계의 융합 및 조정을 위한 동적 시스템(dynamic system)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서비스 교역**

DCFTA가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 의미가 있으려면 통합·인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같이 발전된 형태의 FTA도 서비스 교역 자유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서비스 교역의 주요 장벽이 서비스 제품 및 시장의 규제 다양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경제적 효과**

CETA<sup>3</sup>(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의 예를 보면 중요한 경제적 효과(‘캐나다 드라이’라고도 불림)는 예상이 된다. 그러나 CETA와 같은 단순한 FTA는 무제한 무역(frictionless trade)을 허용하지 않으며, 규제와 통관 관리 목적의 국경 통제도 필요하다. 만일, 영국이 캐나다의 사례를 따르려고 한다면 거래자들은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현재 EU에 구축되어 있는 안정적인 공급

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의 투자가 EU 내부 시장으로의 완전하고 자동적인 접근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EU 회원국은 무역에 대한 국경 통제를 마련하기 위해 영국과 상당한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 분쟁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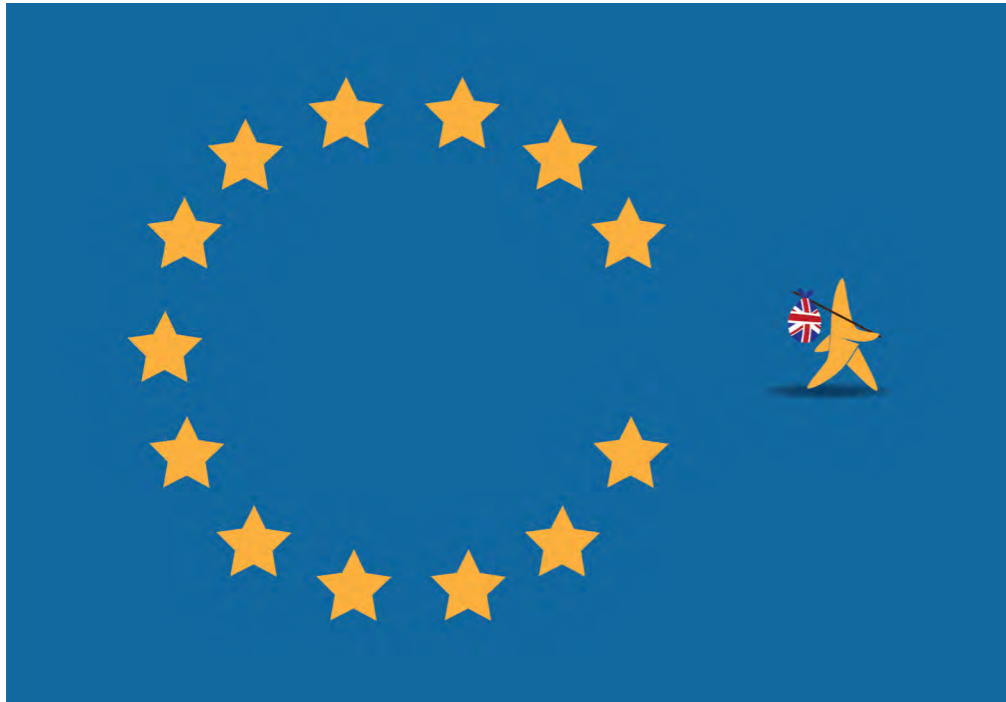
DCFTA는 특히 규제 통합 및 인식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CETA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강력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최근 EU의 관행은 관할권이 있는 분쟁해결위원회를 제공해 WTO의 체계를 모방하고 있으나, 통합 및 인식의 측면에서 DCFTA의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 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sup>4</sup>(ISDS) 조항: 민간 투자자들이 최소한 DCFTA의 일부라도 준수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는 분쟁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 거래자들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
- ② 투자법원제도<sup>5</sup>(Investment Court System, ICS) 및 다자간투자법원(Multilateral Investment

3 포괄적 경제 및 무역 협정(CETA)은 캐나다, EU 및 그 회원국 간의 FTA로 캐나다와 EU 사이의 관세 98%를 철폐했다. 유럽의회는 2017년 2월 15일 이 협정을 승인했으며, 2017년 9월 2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4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나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5 EU가 ISDS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투자법원제도(ICS)는 임시적(ad hoc) 재판부 대신 2심 법원을 포함한 상설 법원의 설립, 조약 당사국의 재판관 임명 및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 적용 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조정 체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내 법원 및 국제 법원의 운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조약 당사국이 갖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비록 ICS의 도입만으로는 기존 ISDS 제도상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196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urt, MIC): EU에 의해 제안된 ISDS에 대한 대안으로 ICS는 CETA에 규정되어 있다.

③ EFTA 법원: EU와 영국에 있는 각각의 EFTA와의 분쟁 해결 사례 및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EU와 영국 사이에 어떠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현재 EU 시스템의 적용으로는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실제 법 집행과 관련한 비용은 기존 EU 체계하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다.

**4. 세계무역기구(WTO)**

**(1) WTO 옵션 관련 영국의 법적 지위 및 전환 관련 조정사항**

• **영국의 법적 지위**

영국은 WTO의 회원국이므로 영국이 EU를 떠나면, 영국은 자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WTO 법적 의무를 계속 집행해야 한다는 게 법적 해석이다. 따라서 영국은 아래에 대해 WT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영국 수입관세율: EU 스케줄에 따름
- ② 서비스 스케줄: EU와 회원국의 GATS 스케줄에 따름
- ③ 농업 지원정책: EU의 약속사항

• **전환 관련 조정사항**

EU 탈퇴로 영국은 관세율 할당량(Tariff-Rate Quotas, TRQ)을 조정해야 한다. 할당량 제한 연간 수입 물량에 차별화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데, EU와 영국은 할당량을 분할하는 TRQ의 분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제3국과 정치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향후 무역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분할의 성격이 단순 수정이 아니라 기존 스케줄의 수정이라고 법적으로 판단될 경우, GATT 18조에 의거해 다자간 재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한편, 농업 지원정책 조정과 관련해 WTO 회원국들은 앰버박스보조금<sup>6</sup>(Amber Box Subsidies) 지원총계(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측정에 합의했다. 따라서 EU와 영국 간 협상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가 필요하다.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WTO 이행은 법적인 어려움은 적겠지만, 정치적 어려움은 더욱 광범위한 WTO 협상의 필요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통상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통상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영국은 WTO의 조건에 따른 통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 ① EU-영국 무역에서 완전한 관세(제품 관세의 가중평균은 낮으나, 최고 관세가 있고,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높은 수준임)
- ②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한 관세 누적 효과
- ③ 통관 및 규제 목적을 위한 국경 통제 도입
- ④ 무역 보호 조치의 잠재적 적용(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의무)
- ⑤ 제3국과의 무역을 위해 EU 규제 제도를 영국의 재화 및 서비스에 완전하게 적용: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영역에서도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없음
- ⑥ EU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영국 규제 체계의 불확실성
- ⑦ 공공 조달의 자유화로 인한 손실

- ⑧ 서비스 분야에서 내부 시장 자유화의 손실(예: 운송, 통신, 금융 서비스 등 일부만 해당)
- ⑨ 법 선택 및 판단에 잠재적인 간섭 요인 존재

**(3) 분쟁 해결**

WTO 옵션하에서 영국과 EU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는 WTO 규정 체계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그 경우, EU의 내부 시장 규정 체계와 WTO의 규정 체계 간 차이로 인해 분쟁 해결 과정에 많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예상 시나리오**

브렉시트 이후의 단계별로 나눠 각각의 가정 및 앞서 언급한 대안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보았다.

**1. 전환 단계(transition phase)**

**(1) 가정**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브렉시트 이후 전환 기간에 대한 EU의 입장이 채택될 것으로 가정했다. 즉, 영국은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국에 대표성이 없는 EU의 모든 법적 의무에 의해 계속 구속될 것이다.

**(2) 시나리오**

EU가 아닌 계약 당사자들은 그들의 협정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들 제3국의

<sup>6</sup> 앰버박스보조금은 특정 국가의 제품을 다른 나라의 동일 제품에 비해 저렴하게 만들어 국제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이다. 그러한 보조금의 예로는 전기, 씨앗, 비료, 관개, 최소 지원 가격 등이 있다.



수출과 무역 관계에 있어 통상과 경제 조건은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EU의 공동 통상정책을 계속 적용하고, 영국으로의 수입은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취급될 것이며, 관련된 제3국 제품이 일단 영국으로 수입되면 무관세로 인해 유럽 내 시장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EU와 영국이 관련 제3국들과 협의를 하고, 무역 협정을 계속 적용하기 전에 모든 당사자들이 정식 문서가 아닌 간단한 서신 교환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환 이후(beyond transition)**

**(1) 가정**

EU-일본의 FTA하, 브렉시트하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정해 아래와 같은 가정을 적용했다.

- 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영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생산량을 공급하는 대규모 자동차 조립 공장의 형태로 투자하고 있다. 그 무역은 현재 무역 마찰이 전혀 없다.



- ② 영국에 본사를 둔 공장이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한 EU의 관세가 적용된다.

**(2) 시나리오**

- **시나리오 1(관세동맹 옵션): 영국은 EU와 여전히 관세동맹을 유지하며, EU-일본 간 FTA의 조건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 ① 영국에 기반을 둔 일본 제조업체들은 EU의 나머지 지역에 기반을 둔 자동차 제조업체들만큼 일본과의 FTA 조건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는다.
-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 규제와 EU 형식 승인 및 적합성 평가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국이 더 이상 내부 시장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공급망(supply chain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시나리오 2(FTA 옵션): 영국은 EU와 FTA를 체결하고, 일본과 FTA를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는다.**

- ① 일본에 기반을 둔 일본 제조업체들은 EU의 10%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영국 FTA의 원산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영국이 일본과 자체적인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a) 영국에 기반을 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관세 없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b) EU를 통한 관세 없는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 ③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시나리오 1과 유사하다.
- ④ 반면 EU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모든 혜택을 누릴 것이다. 만약 영국이 일본과 자체적인 FTA를 체결한다면, 영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 역시 (a)를 얻게 되지만 (b)는 누리지 못한다.

- **시나리오 3(WTO 옵션): 영국이 WTO 조건에 따라 EU 및 일본과 무역 수행**

- ① 영국에 기반을 둔 일본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경쟁적 불이익(competitive disadvantages)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입, EU로부터의 부품 수입(영국이 일방적으로 자유화하지 않는 한) 및 조립 차량의 EU 시장 수출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비관세장벽은 영국-EU 거래에 적용될 것이다.
- ③ 반면, EU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문제점들 중 어느 것도 겪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고려하면, 특히 시나리오 2-3이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관세동맹이 유지된다면, 현행 제3국과의 FTA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을 지원하는 일은 EU의 이익이 될 것이다. 반면에 미래의 교역 조건이 FTA나 WTO 조건에 대한 교역으로 구성된다면, 현재 EU가 누리고 있는 무역 협정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영국을 지원하는 게 EU에 도움이 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결론**

지금까지 시장 통합과 무역 자유화라는 2가지 핵심적인 패러다임을 통해 미래의 EU-영국 간의 무역과 경제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여러 옵션을 검토했다. 그러나 개념적·법적·제도적·정치적 이유로 어떤 옵션이 선택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U의 입장에서 EU를 떠나는 영국과 깊고 포괄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촉진하고 협상하는 일은 이익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EU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성공적인

통합 시장 건설의 훼손 없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과 관련된 EU의 정치적 의무(political imperatives)가 있는데, 이는 EU를 탈퇴하는 회원국들이 EU 내에 잔류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선별(cherry pick)해서 계속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의 옵션에 대한 선택과 협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도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서에 대한 표결이 부결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국경 갈등 문제는 아직 내 부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국의 EU에 대한 390억 파운드의 분담금 지급 여부’, ‘EU 회원국에 거주 중인 영국 국민들의 처우를 어떻게 다루고, 영국에 거주 중인 EU 국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의 여러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과 EU가 각자가 처한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고, 이후 미래 통상 및 경제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위해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가 양 당사자 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Contact**  
 송준길 상무  
 재무자문본부 구조조정그룹  
 02-6676-1680  
 joosong@deloitte.com